소관부서 : 안전총괄과

제정 1996 · 3 · 1 훈령 제 13호 개정 1999 · 2 · 26 훈령 제 92호 개정 2007 · 7 · 2 훈령 제177호 개정 2008 · 8 · 1 훈령 제181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19 · 1 · 1 훈령 제274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21 · 3 · 4 훈령 제293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23 · 3 · 6 훈령 제315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23 · 3 · 6 훈령 제315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24 · 7 · 1 훈령 제328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세부시행규칙에 의거 이천시방위지원본부 (이하 "지원본부"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비정규전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지원본부는 이천시방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협의회안에 설치한다.
- 제3조(구성) ①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.
 - ②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, 군경정보 작전합동상황실 그리고 8개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되며. 그 기구는 별표와 같다.
 - ③ 지원본부 및 각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.
 - 1. 군 · 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

가. 구 성

군·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군·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과 군·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제3901부대 작전장교 또는 이천경찰서 경비과장이 된다.

나. 운용책임

- 1) 평 시 : 이천경찰서장
- 2) 사태발생시 : 제3901부대장

2. 종합상황실

- 가. 종합상황실장은 지원본부안에 설치한다.
- 나. 종합상황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 감독한다.
- 3. 분야별 지원반
- 가. 지원받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수송지원반, 의료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(급식)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한다.
- 나. 각분야별 지원반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반장과 지원반으로 구성 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원반장은 지원반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다. 각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내 제요소가 공동 참여하며 지원 계통별 하부조직을 활용한다.
- **제4조(통제)** 각 분야별 지원반은 종합상황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보고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 〈개정 99·2·26, 2007·7·2, 2008·8·1, 2019·1·1, 2021·3·4, 2023·3·6, 2024·7·1〉
 - 1. 지원본부장 : 부시장
 - 가. 지원본부는 사무를 관장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지휘 감독한다.
 - 나.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
 - 다. 산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지휘감독
 - 라. 각 분야별 업무의 협조 및 조정 통제
 - 마. 상하 인접지원 기관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
 - 바. 시정의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또는 우 발상황 발생 시 즉응 지원태세 유지
 - 2. 군·경 정보작전상황실(장): 제3901부대 작전장교 또는 이천경찰서 경비과장
 - 가. 정보지원계획수립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
 - 나. 신속정확한 정보발령 및 전파

- 다.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
- 라.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, 긴밀한 협조체제유지
- 마. 시 및 경찰작전상황을 종합지원상황실(장)에 통보 및 협조
- 바. 주민신고 업무관장
- 사. 작전 및 대비정규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
- 3. 종합상황실 (장) : 기획예산담당관
 - 가. 각종상황 파악유지 및 각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
 - 나. 신속정확한 정보전파
 - 다.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지시
 - 라. 대비정규전 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협의회에 건의
 - 마. 산하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종합지원상황실 지휘감독
 - 바.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계획 조정통제
- 4. 총괄지원반(장): 자치행정과장
 - 가. 지원본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
 - 나. 정기 또는 수시로 운용되는 지원회의 관장
- 5. 인력동원지원반(장) : 안전총괄과장
 - 가.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관장
 - 나. 예비군,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
 - 다.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
 - 라.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집행 준비 및 지원
 - 마. 가용인력 및 병력동원집행 준비 및 지원
 - 바. 주민통제 업무관장
- 6. 건설수송지원반(장): 건설과장, 도시과장
 - 가. 산업, 건설 및 수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비정규전 작전지휘 차량소요 판단 및 확보
 - 나. 건설복구 및 수송 지원조 편성운영
 - 다. 실비변상 및 회수 반환업무 관장

- 라.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
- 마. 민방위 기술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관장
- 7. 의료, 구호지원반(장): 복지정책과장, 보건소장
 - 가.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동지원업무 관장
 - 나. 의료구호조를 편성 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, 조정통제
 - 다.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
 - 라. 국가동원게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
 - 마.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수행
- 8. 통신지원반(장) : 이천전화국 선로과장
 - 가. 통신지원계획의 수립, 시행 및 동지원업무관장
 - 나.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운영
 - 다. 종합통신 운영계획수립 시행감독
 - 라. 통신지원 조편성, 운용 및 통신시설가설 복구
 - 마. 국가 동원계획의 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
- 9. 보급(급식)지원반(장) : 농업정책과장
 - 가.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작전동원 병력급식 및 보급지원 업무 관장
 - 나.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지원
 - 다.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자 동원집행준비
- 10. 홍보지원반(장) : 홍보담당관
 - 가. 홍보 및 계몽계획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
 - 나.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(계몽) 반편성 운영
 - 다.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집행준비
 - 라.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수립시행
- 11. 재정지원반(장) : 회계과장
- 가. 예산지원계획수립시행 및 동지원 업무관장
- 나. 지원본부 운용예산 확보 및 집행결산

다.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준비

제6조(직무) 지원본부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본 부 장: 지원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본부를 대표
- 2. 종합상황실장 : 본부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감독하며 본부장 부재시 본부 장을 대행
- 3. 지 원 반 장 : 지원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 장 및 종합상황실장 부재시에는 편재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
- 4. 지 원 반 원 :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분야별 지 원반장 부재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순으로 직무를 대행
- **제7조(근무)**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 운용한다.
- 제8조(회의소집) ① 지원본부 정기회의는 반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부대 합 동훈련시 또는 방위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소집한다.
 - ② 지원본부 회의에는 종합상황실장과 종합상황실요원 전원 및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1999・2・26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7 · 7 · 2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〈2008·8·1 훈령 제181호, 이천시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이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"혁신정책담당관"을 "기획감사담당관"으로 하고 제4조제9호중 "농림과장"을 "농정과장"으로 한다.

(8) 부터 (II) 까지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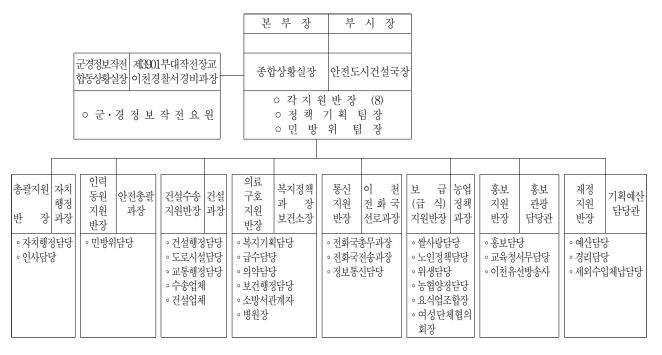
부칙〈2019·1·1 훈령 제274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내지 ③ 생략

④ 「이천시 방위지원본부 규정」제4조제3호 중 "기획감사담당관"을 "기획예산담당 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재난안전과장"을 "안전총괄과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"도시과장"을 "도시계획과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시민생활지원"을 "복지정책과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"농정과장"을 "농업정책과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"예산공보담당관"을 "홍보관광담당관"으로 하며,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천 시 민 방 위 지 원 본 부 구 성



(5) 내지 (7) 생략

부칙〈2021・3・4 훈령 제293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「이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제4조제10호 중 "홍보관광담당관"을 "소통홍보 담당관"으로 하고, 별표 중 "교통정책담당"을 "교통행정담당"으로, "홍보관광담당관" 을 "소통홍보담당관"으로, "홍보담당"을 "홍보기획담당"으로 한다.

④ 및 ⑤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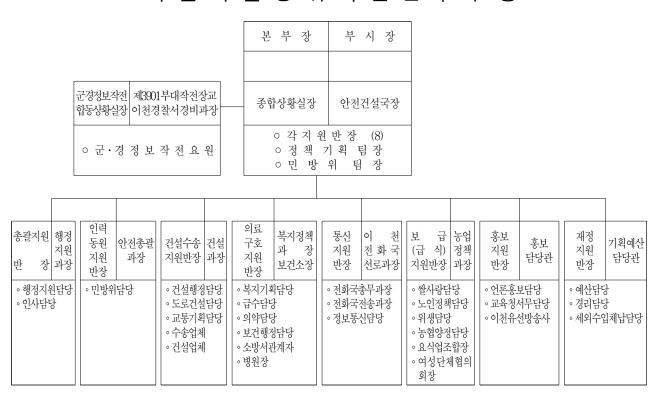
부칙〈2023·3·6 훈령 제315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이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제4조제4호 중 "자치행정과장"을 "행정지원과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도시계획과장"을 "도시과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 10호 중 "소통홍보담당관"을 "홍보담당관"으로 하고,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천 시 민 방 위 지 원 본 부 구 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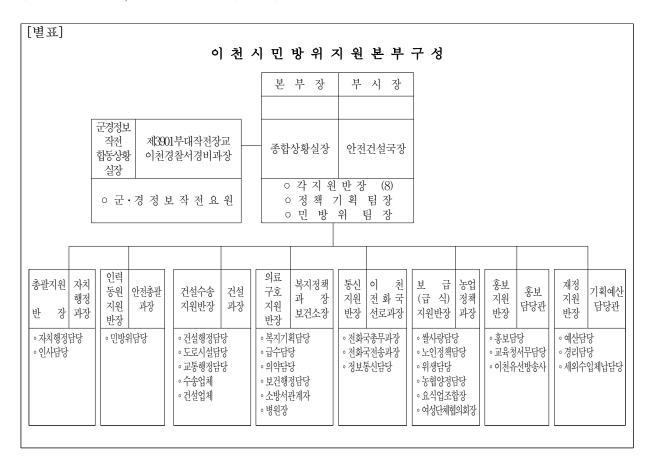
⑧ 부터 ③ 까지 생략

부칙〈2024·7·1 훈령 제328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이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 제4조제4호 중 "행정지원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으로 하고,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
⑥ 부터 ⑨ 까지 생략

[별표] 〈개정 2024·7·1〉

이 천 시 민 방 위 지 원 본 부 구 성

